

학부교육원 규정

제정일: 2017.03.17.

개정일: 2019.02.20.

담당부서: 학부교육원 행정팀(033-760-2947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기관의 명칭은 “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학부교육원(Institute of Undergraduate Education : 이하 “교육원”)이라 한다.

제2조(소재) 본 교육원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내에 둔다.

제3조(목적) 이 규정은 학부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 교육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 학부교육(교양, 비교과) 기본방향 및 정책수립
- ② 학부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
- ③ 교양교육학부, 교양교육개발센터, RC교육센터 업무관장

제2장 조직 및 업무

제5조(조직) 학부교육원 산하에 다음 조직을 둔다.

- ① 교양교육학부(Department of Liberal Education)
- ② 교양교육개발센터(Center for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)
- ③ RC교육센터(Center for Residential College)
- ④ 행정팀

제6조(학부교육원) 교육원은 원주캠퍼스 교양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① (학부교육원장) 원장은 원주부총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(업무) 교육원은 원주캠퍼스 학부교육(교양, 비교과) 기본방향 수립, 교양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, 교양교육학부, 교양교육개발센터, RC교육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(교양교육위원회) 원주캠퍼스 교양교육(교양,비교과)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교양교육위원회를 둔다.

제7조(교양교육학부) 교양교육학부는 원주캠퍼스 교양교육과목을 운영하며, 소속교원의 교무업무를 담당한다.

- ① (교양교육학부장) 교양교육학부장은 교양교육학부를 대표하고 교양교육학부 업무를

관장한다.

- ② (업무) 교양교육학부는 소속교원의 교과목 개설 및 운영, 교원 인사 업무를 **관장**한다.
- ③ (교양교육학부 인사위원회) 교양교육학부 소속 교원에 대한 인사관련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교양교육학부장(위원장)과 교양교육학부장이 제청하여 학부교육원장이 임명한 교수로 구성한다.

제8조(교양교육개발센터) 교양교육개발센터는 캠퍼스 내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기획, 편성, 진단, 평가 등을 담당하며 교과과정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.

- ① (교양교육개발센터장) 교양교육개발센터장은 교양교육개발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**관장**한다.
- ② (업무)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, 기획, 과정 편성, 진단, 평가, 콘텐츠 개발 업무를 진행한다.

제9조(RC교육센터) RC교육센터는 Residential College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
- ① (RC교육센터장) RC교육센터장은 RC교육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업무를 관장한다.
- ② (업무) 밀착형 멘토링 프로그램, 레지던셜 콜로키아 및 리더십 교과목운영, 레지던셜 콜로키아 공모전, 하우스 및 분반별 공동체 활동지원, 신입생 입학식 및 RC오리엔테이션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.
- ③ (마스터교수) RC교육센터에는 하우스 마스터교수를 둔다. 하우스 마스터교수는 RC교육센터장의 제청으로 원주부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리더십 교과목 관리·운영, 1학년 RC학생에 대한 밀착형 멘토링을 담당한다.

제10조(행정팀) 교육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팀을 두며, 학부교육원 및 산하 기구의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각 기구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한다. 직원의 임명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원주캠퍼스 직원 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장 기 타

제11조(회의) ① 각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각 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,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, 이 경우 재적위원 3/4(소수점 이하 절상)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규정의 제·개정) ①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.

- ② 학부교육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주

부총장의 결재를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③ 규정의 제·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「규정류 관리 규정」 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.

부칙

(1) (경과조치) 학부교육원 설립 이후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(2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(3)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)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(4) (경과조치) 이 규정(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)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